

#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

대통령 박정희

1975년 12월 31일

국무총리  
서리 최규하  
국무위원 김재규  
건설부장관

◎ 法律第2 853號

住宅建設促進法중改正法律

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.

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3條 (住宅建設計劃樹立 등) ①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에 관한 基本政策, 長期建設計劃 및 年次別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建設部長官은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.  
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計劃에 따라 每年 国民住宅의 建設計劃 및 資金運用指針을 作成하여 經濟企劃院長官과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地方自治團體·大韓住宅公社 및 韓國住宅銀行에 示達하여야 한다.

③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建設計劃을 樹立하여 每年 4月 月 30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住宅建設長 短期計劃을 効率的으로 樹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年 住宅에 관한 調查를 実施하여야 한다.

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主体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한다.

第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住宅銀行이 国民住宅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樹立된 長期建設計劃에 맞추어 發行額數를 정하여,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第13條第1項 중 “第3條”를 “第3條第2項” 으로 한다.

第1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17條의 2 (土地收用法의 準用) ①事業主体 (第2條第3號의 기타의 事業者를 제외한다) 가 国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나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그 土地나 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(이하 “土地등”이라 한다) 를 収用·사용할 수 있다.  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등을 収用·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.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 인정으로 본다. 다만,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의 承認을 함에 있어서 承認 받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.

第18條의 題目 “(事業計劃의 承認)”을 “( 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등)”으로 하고,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, 同條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①事業主体가 国民住宅을 建設하거나 国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한 基地造成事業을 하고자 할 때

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경미한 事業計劃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事業主体(国家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)가 第 1項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長(서울特別市長 · 釜山市長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郡守를 經由하여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.

⑤ 第 1項의 规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事業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建築法 第 5條 및 第 8條의 规定에 의한 建築許可 · 協議 또는 承認과 都市計劃法 第 4條 · 第 24條 및 第 25條의 规定에 의한 許可 · 承認 또는 認可 및 同法 第 12條의 规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⑥ 建設部長官이 国家 또는 大韓住宅公社인 事業主体에 대하여 第 1項의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関係 部 · 處 · 廳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.

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第21條** (分讓価格 등의 承認) 事業主体는 国民住宅의 分讓価格 또는 家賃을 당해 国民住宅의 建設에 所要된 実費를 基準으로 정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第24條第 2項중 “(서울特別市長 · 釜山市長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削除한다.

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第30條** (監督) ① 建設部長官은 事業主体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, 免許 또는 承認의 取消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.

① 道知事 또는 市長 · 郡守는 事業主體가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.

第31條第 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建設部長官 · 道知事 또는 市長 ·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의한 免許 또는 承認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출입하여 필요한 檢查 및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.

條38條第 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, 同條에 第 4號 및 第 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3. 第21條의 规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承認얻은 価格을 초과하여 分讓 또는 賃貸한 者

4. 第30條 내지 第32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 
5. 第31條第 1項의 规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查 및 質問에 不応한 者

第6條第 5項중 “第 4項”을 “第 1項 내지 第 4項”으로 한다.

第7條第 2項, 第16條第 2項, 第17條第 2項, 第18條第 2項, 第19條第 2項, 第31條第 2項 및 第34條第 2項중 “前項”을 각각 “第 1項”으로 한다.

第17條第 3項, 第18條第 3項, 第19條第 3項 및 第24條第 3項중 “前項”을 각각 “第 2項”으로 한다.

第17條第 4項 및 第19條第 4項중 “前項”을 각각 “第 3項”으로 한다.

第13條第 5項중 “前項”을 “第 4項”으로 한다.

#### 附 則

- ① 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- ② (경과措置) 이 法 施行전에 第18條第 1項의 规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同條 第 5項의 规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

#### 에너지 소비 절약표어

에너지는 国力이다. 아껴써서 愛國하자.  
기름으로 만든 전기. 한등꺼서 애국하자.

쓰고나면 再生없다. 에너지를 節約하자.

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.  
너도나도 겉기운, 절약되고 건강준다.